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6일 16시 51분



목차

목차	2
공공근로사업	3
공공근로사업	3
사업기간 : 2023. 2. ~ 11.(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)	3
사업내용	3
신청자격	3
2023년 기준중위소득 70%의 범위	3
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	3
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	4

공공근로사업	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장애인일자리사업		



공공근로사업

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계층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📅 사업기간 : 2023. 2. ~ 11.(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)

- 상·하반기 모집하며 사업추진 일정은 시 홈페이지, 읍·면·동 게시판 등에 게시
- 상반기 : 2023. 2. 13. ~ 6. 30.
- 하반기 : 2023. 8. 7. ~ 11. 30. (예정)

📌 사업내용

정보화사업, 서비스지원, 환경정화사업, 기타 사업 등 4대사업

📌 신청자격

만 18세 이상 ~ 만 75세 이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% 이하(1인가구도 70%이하)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

📌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%의 범위

(단위 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
70% 범위	1,454,524	2,419,309	3,104,371	3,780,675	4,431,482	5,059,587

📌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

- 접수 시작일 이후,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자 (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,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프로그램을 거쳐야 재참여 가능)
-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
- 1세대 2인 참여자
-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·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(단, 부모는 가능하고,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가능)
-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사업 참여 후,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

- 근로시간
 - › 정보화사업: 주40시간
 - › 환경정화 및 서비스지원 사업: 주25시간(65세 미만)/주15시간(65세 이상)
- 임금단가: 시급 9,620원(주 · 연차 및 간식비 별도 지급)

Yeosu Web Contents

